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8. 24.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8.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9회국회(정기회)

－ 제2차 전체회의(2026. 9. 1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의결(대안반영폐
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황운하의원)

현행법은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개정 「중수청법」 제4조제1호1)는 중수청의 직무로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2)은 「전자금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

용거래법」에 규정된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보임.

다만, 수사 업무의 이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
법광고 관련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총
장’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상혁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없음